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김창원 의원 외 10명
- 의안번호 : 제2235호
- 제 안 일 : 2017년 11월 7일
-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10일

2. 제 안 이 유

- 천만 반려동물 시대를 맞아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함께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.
- 이에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공원시설의 하나인 동물놀이터의 설치근거가 정해져 있으므로, 본 조례에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반려동물로 인한 주민간의 마찰을 줄이고 동물과 시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원을 만들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. (제5조제5항 신설)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 선 희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이하 규칙)」 제11조제2항제11호에는 동물놀이터를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가 정한 주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1) 상위법령 검토

- 시행규칙 제11조(첨부 참조)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과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규모를 제시하고 있음.
- 동물놀이터는 2014년 1월 1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원시설로 추가되었으며, 당시 동물놀이터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음. 이후 2016년 3월 31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상태임.

2) 서울시 공원에 설치된 동물놀이터 현황

- 서울시에는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와 연계하여 운영중인 동물놀이터가 어린이대공원, 월드컵공원, 보라매공원 3곳이 있으며, 18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중인 곳이 중랑구 봉화산근린공원, 강서구 궁산근린공원, 서울숲 등 총 3곳이 준비중으로 모두 10만^m이상의 근린공원임.

3)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주제공원에 설치 가능한가? 에 대한 의견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는 도시공원을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세분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,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주제공원을 신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.
-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주제공원은 본 조례 제3조에 명시되어 생태공원, 놀이공원, 가로공원이 있음. 이중 생태공원은 창포원 1곳, 가로공원은 왕십리 뉴타운에 조성된 3개소가 있고, 현재 조례로 정한 놀이공원은 없음.

〈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로 정한 주제공원 현황〉

구분	공원명	면적(m ²)	위치	비고
생태공원	창포원	51,470	도봉구 도봉동	시직영(중부)
가로공원	왕십리 뉴타운 1	2,452	하왕십리동 1066-1	구공원
	왕십리 뉴타운2	2,517	상왕십리동 811-3	구공원
	왕십리 뉴타운3	3,842	상왕십리동 217-3	구공원
놀이공원	-	-	-	-

-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동물놀이터를 도시공원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주제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음.
- 그러나 기존 주제공원 내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원래 목적의 주제공원으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어, 실제 주제공원 내에 동물놀이터 설치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.
- 또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은 도시공원의 기능 및 주제에 따라 세분할 수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와 같이 반려동물 공원을 주제공원으로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.

첨부

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11조(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) ①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.

1.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합계는 해당도시공원의 면적에 대하여 별표 4의 비율에 적합할 것
2. 체육공원에 설치되는 운동시설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일 것
3.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 중 시설물의 설치면적은 도시공원면적의 5퍼센트 미만일 것

②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08.11.10., 2012.12.11., 2013.11.22., 2015.2.12., 2015.9.11., 2016.3.31., 2017.10.27.>

1. 유희시설 중 순환회전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유희시설(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 한한다)로서 해당시설의 이용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 :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
2. 편익시설 중 휴게음식점 :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. 다만, 1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공원(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)의 경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.
- 2의2. 편익시설 중 일반음식점 :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. 다만, 「관광진흥법」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안의 5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공원으로서 공원관리청이 관할 도시공원위원회(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·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·군·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.
3. 편익시설 중 유스호스텔 :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(묘지공원을 제외한다)
4. 다음 각 목의 편익시설: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경기장이 설치된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

가. 선수 전용숙소 및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

나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또는 쇼핑센터로서 매장면적(대형마

- 트와 쇼핑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) 및 부대시설(기계실 및 창고를 포함한다)의 연면적이 각각 1만6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
5. 운동시설 중 승마장 :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
 6. 운동시설 중 골프장 :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
 7.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: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. 다만, 다른 운동시설과 함께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(이하 "실내골프연습장"이라 한다)은 그 면적이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원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.
 8.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운동시설 :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
 9. 교양시설 중 어린이집 :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(묘지공원을 제외한다). 다만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은 해당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.
 10. 교양시설 중 학생기숙사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공원
 - 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(이하 이 호에서 "대학"이라 한다)의 교지(校地)에 있거나 교지에 닿아 있을 것
 -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것
 - 다. 2012년 12월 12일 현재 가목에 따른 대학의 설립·경영자(국립대학법인을 포함한다)가 해당 도시공원의 부지 중 학생기숙사를 건축할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을 것
 11.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: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법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공원
 12. 별표 1 제9호라목에 따른 보훈회관: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법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공원